

및 자원 봉사자의 보호·보상 등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

-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,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과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·장려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기능, 위탁운영, 자원봉사단체협의회구성, 교육훈련,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,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, 실비보상 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권고 및 경상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의거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등과 차별화 등으로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우리군에 개별적으로 여러봉사단체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고성군 자원봉사단체 연합회 구성을 군에서 주도했는가?
- 답 : 군에서 관여한 것은 없으나 2003. 12. 19 창립총회시 회의진행 상황을 알기위하여 참석한바 있음.
- 문 : 우리군을 위해서 숨은 봉사를 계속해 왔던 사회봉사단체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?
- 답 : 고성군 자원봉사단체 연합회에서 고성군관내 각급학교, 기업체,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가 센터에 등록할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.
- 문 :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는 개별적으로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고, 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?

● 답 : 예. 지원 받을 수 있음.

○ 문 : 자원봉사단체 연합회를 비영리법인 단체로 만들어서 위탁운영할 계획인지?

● 답 :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차후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정시에 위탁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음.

○ 문 :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학교·기업 또는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등 조정기능과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향후 1년간 직접 센터를 운영한후에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함이 옳다고 보는데?

● 답 : 앞으로 1년간 군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후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4. 1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